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016

발의연월일: 2021. 8. 11.

발 의 자:김병기·김경협·조태용

홍기원 • 이개호 • 전용기

기동민 • 고영인 • 김진표

이정문 · 조승래 · 소병철

안민석 · 윤준병 · 이상헌

강훈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 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재직 시 쌓 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.

또한, 경찰·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·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국가정보원 퇴직직원(퇴직 예정자 포함)의 취업,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

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) ① 원장은 퇴직직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)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, 창업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2조의2(퇴직직원 취업 등 지
	원) ① 원장은 퇴직직원(퇴직
	예정자를 포함한다)의 전문성
	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
	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
	위에서 취업, 창업 및 경력개발
	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